제316회 서산시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 (의안번호 제76호)

2026. 10.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〈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〉

검 토 보 고 서

Ⅰ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제76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제출일자 : 2026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13일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❍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종료 시기가 도래함(2026. 12. 31.) 에 따라,

❍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위탁시설개요

- 시 설 명 :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

- 위　　치 : 서산시 학동3로 53 (구.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2층)

당초위치 :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(서산문화원 내 2~3층)

- 임차기간 : 2014. 9. ~ 2027. 6. (보증금 450백만원, 월임차료 247천원)
- 위탁기간 : 2021. 11. 1 ~ 2026. 10. 31.(5년)
- 위탁시설규모 : 대지면적 1947.2㎡, 연면적 630㎡ **(2층 면적 271㎡)**
  지상 3층
- 근무인원 : 2인(행정지원 1, 시설물관리 1)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
- 위탁시설현황

구 분	면적(㎡)	내　　용
2층	271	영상·라디오 스튜디오, 스튜디오 부스, 강의실 등

- 운영현황 : 2021. 1. 1 ~2026. 12. 31 **(서산문화원에 위탁 운영)**

연 도	운영예산 (천원)	사용횟수 (대여+대관)	사용자수 (대여+대관)	사용료* (천원)	수탁기관	위탁기간
계	539,192	482	7,871	74,354		
2024	167,000	179	2,843	34,435	서산문화원	2024. 1. 1. ~ 2026. 12. 31. (1회 재계약)
2025	204,801	157	3,100	28,234		
2026. 8.	167,391	146	1,928	11,685		

○ 위탁 추진 계획

- 위탁사무 :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
- 위탁예산 : 금167,981천원

(단위 : 천원)

총 계	인건비	사무운영비	활성화 사업비
167,981천원	84,880	43,101	40,000

*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직원(2명) 고용 승계 조건*

- 위탁기간 : 2027. 1. 1 ~ 2029. 12. 31.(3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

○ 위탁사무내용

-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
- 영상미디어센터 대관업무
-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 운영

Ⅲ. 검토의견

1. 제안목적

○ 본 동의안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6. 12.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근거

-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

관련이 없는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「행정재산의 관리위탁」 제27조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」 제4조 제5조에서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시설관리 사무 및 문화·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등을 위탁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

- 「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《지방자치법》

제117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《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》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《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》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・검사・검정・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・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5조(위탁 대상사무)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・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《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》

제10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수탁자의 자격)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미디어교육 및 영상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2. 문화체육관광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3. 그 밖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나. 위탁의 필요성

- 서산시 영상 미디어센터는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·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시설로서
-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나.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 기간 적절성 여부

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에 관리위탁의 경우 입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

-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」제10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

- 같은 조례 제18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

《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》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

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《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》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방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8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Ⅲ. 종합검토

가. 본 동의안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6. 12.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

나.「지방자치법」「행정재산의 관리위탁」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」「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등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타당함

다.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」에서도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

라.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 및 라디오의 콘텐츠 제작·편집 등 미디어 활

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마.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